

2016.05.27

「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」 개정 고시

1.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

• 개정이유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확인 대상물품인 리튬이차전지 중 에너지 밀도 400Wh/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안전확인대상에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.

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 밀도 400Wh/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에 대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• 시행일자 : 16. 5. 4.(수)

주요내용

① 제2조(에너지 밀도 400Wh/L 미만 리튬이차전지 한시적 시행유예)
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-276호 부칙 제3조제4호와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2 '제10호 정보·통신·사무기기의 파목 전지'에도 불구하고 '에너지밀도 400Wh/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'는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며,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② 세부내용 확인

» 홈페이지(www.kats.go.kr) 접속 → 소식(고시·공고) →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-119호